2021학년도 결산감사 및 인계·인수감사 보고서

[감사기간: 2022. 3. 21. ~ 4. 13.]

2022. 4. 27.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목 차

■ 2021학년도 결산감사 및 인계·인수감사 보고서 ····· 1

■ 감사결과 지적 및 권고 사항

1. 조선대학교 ····· 3

2021학년도 결산감사 및 인계·인수감사 보고서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 사 회　　귀 중　　2022년 4월 27일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와 우리법인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3월 21일부터 4월 13일까지 학교법인조선대학교 및 설치학교인 조선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그리고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재산상황, 회계에 대한 감사와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에 대한 인수·인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우리가 실시한 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다　음

1. 제 법령, 정관, 규정의 준수 여부
2. 법인 및 각 설치학교의 규정 정비 여부
3. 제 규정의 법령, 정관 및 타 규정과의 부합 여부
4. 편성된 예산의 실행가능성, 현실성 및 적정성 여부
5. 적절한 자산관리와 그 유지 여부
6. 법인과 설치학교간의 유기적 협조 여부
7. 법인 및 설치학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부
8. 각 기관장의 업무장악 및 효율적인 통제 여부
9. 적절한 내부통제 제도의 유지 여부
10. 예산집행 시 법령 및 제 규정 준수 여부
11.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 전용의 적절성 여부
12. 결산은 이사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는지 여부
13. 각급 기관장 및 회계책임자의 변경 시에 인계·인수 적정성 여부
14. 기타 법인과 각 설치 학교 및 기관의 발전계획 검토 등

각급 기관의 회계는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회계기준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 따로 붙임 지적된 사항은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서 나온 것이나 모든 취약점이나 개선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각급기관은 따로 붙임 지적된 사항 외 개선사항에 대하여 내부통제를 통하여 꾸준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 하시고, 업무수행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7일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김채인 (인)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박태성 (인)

2021학년도 결산감사 및 인수·인계감사 결과보고서

(2022. 4. 27.)

기관명: 조선대학교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김 채 [illegible] (인)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박 태 [illegible] (인)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1	**교비회계 예산관리 부적정 및 기금운용심의회 미준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 제4항에 의하면 적립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예산서의 비등록금회계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한다고 하였고, 「사립학교법시행령」 예산은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편성하며,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기부금수 또한 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금운용 계획 등에 관한 심의를 받아야 하나 조선대학교 2020학년도 기금운용심의회와 2021학년도	○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책할 것이니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 비위혐의자 및 「사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3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납품업체 선정 업무 개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에 의하면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에 의하면 단순 물품구매나, 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평가라는 주관적인 요소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술평가 설계가 치밀해야 공정성 시비를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피할 수 있을 겁입니다. 더욱이 이번 구매건과 같이 기술평가로 선정된 물품의 현장 수요자들인 학생들의 교체 요구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사전에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평가방식과 평가위원을 구성했어야 함에도 발주 부서인 기획실 인원과 미술대학 인원을 위주로 구성되어 수요자들인 학생들의 의견이 소외될 수밖에 없도록 불합리하게 구성되었습니다. **금회 입찰 설계금액을 분리 명시하고,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납품 수량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납품자는 이를 체결된 단가로 납품해야 한다'는 조건을 입찰 공고에도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예산관리부서인 재정예산팀에서 주관하는 계약업무를 총무처로 이관하여 관리와 실무 부서를 분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